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고용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정원 98명(9급 9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98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항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5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24 구축·운영 및 개발·기획
4.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구축·운영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9.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운영·관리
13.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알선직업분류의 작성·운영

제6조의2제10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9의2.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0항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의5 및 제13호의6을 각각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

제6조의2제1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11.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총괄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 “223”을 “102”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8”을 “189”로, 행정주사 “985”를 “978”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73”을 “271”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를 “11”로, 행정주사보 “1,060”을 “1,061”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42”를 “345”로,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

보 “12”를 “8”로, 행정서기 “375”를 “382”로, 직업상담서기 “232”를 “226”으로,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5”를 “24”로, 행정서기보 “110”을 “132”로, 운전서기보 “46”을 “47”로, 사무운영서기보 “52”를 “29”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582”를 “68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771”을 “673”으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항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82	92	290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81	91	290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45	27	11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92	11	8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1	9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86	96	290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85	95	290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46	29	11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95	12	8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⑮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16>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u>고용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u>
<신 설>	3. <u>고용24 구축·운영 및 개발·기획</u>
2. <u>고용안정정보망의 구축·운영</u>	4. <u>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u>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구축·운영</u>	6. <u>직업능력개발정보망</u> ----- -----
6. <u>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전송시스템(SPAS)의 구축·운영</u>	7. ----- <u>전산시스템</u> ----- ----- --
3. (생 략)	8. (현행 제3호와 같음)
7. <u>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관리·분석 및 활용 지원</u>	9. ----- <u>구축·관리</u> ----- <u>추진에 관한 사항</u>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9. 고용 관련 민간위탁 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11. (생략)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운영·관리
<신설>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취업 알선직업분류의 작성·운영
12. (생략) ⑰ ~ ⑲ (생략)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⑨ (생략)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 리·총괄 <신설> 10. ~ 13의2. (생략) 13의3.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조정 13의4.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 13의5. · 13의6. (생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⑰ ~ ⑲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9.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9의2.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10. ~ 13의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의3. · 13의4. (현행 제13호의5

14. (생 략)

⑪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11.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⑫ 공정채용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 9. 삭 제

10.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신 설>

<신 설>

및 제13호의6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⑪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2.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운영

⑫ -----
-----.

1. ~ 5. (현행과 같음)

10.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11.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노동 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 회 사무국에 둔다. ④ ~ ⑪ (생략)	<u>관리·총괄</u> 제28조(한시정원) <u><삭제></u> ④ ~ ⑪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223</u>	<u>102</u>	-1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68</u>	<u>189</u>	+121
·	·	·	
·	·	·	
행정주사	<u>985</u>	<u>978</u>	-7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73</u>	<u>271</u>	-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2</u>	<u>11</u>	+9
·	·	·	
·	·	·	
행정주사보	<u>1,060</u>	<u>1,061</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42</u>	<u>345</u>	+3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u>12</u>	<u>8</u>	-4
.	.	.	
.	.	.	
행정서기	<u>375</u>	<u>382</u>	+7
.	.	.	
직업상담서기	<u>232</u>	<u>226</u>	-6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u>25</u>	<u>24</u>	-1
.	.	.	
.	.	.	
행정서기보	<u>110</u>	<u>132</u>	+22
.	.	.	
.	.	.	
운전서기보	<u>46</u>	<u>47</u>	+1
사무운영서기보	<u>52</u>	<u>29</u>	-23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582</u>	<u>680</u>	+98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771</u>	<u>673</u>	-98
·	·	·	
·	·	·	